

의안번호	2210284
의 퇴 인	이개호 의원
회 답 일	2025. 7. 4.
추 계 번호	25C27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 신설)	장기요양요원인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의 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물리·작업요법적 치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 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방문재활 신설(안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 개정안에 따라 재가급여에 방문재활을 신설할 경우 보험급여 지출 확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5월 현재 재가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1)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1)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
-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
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 구성됨

- 급여 신설에 따라 이용하는 인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급여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재가급여의 각 급여는 월 한도액²⁾ 내에서 이용하게 되어 있으나, 급여 신설에 따라 월 한도액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확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니나³⁾,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확대분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에서 국가가 지원(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⁵⁾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방문재활 급여 신설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확대분의 20%에 해당할 것이나, 현 시점에서 신설 급여의 이용 인원, 신설 수가에 따른 공단 부담금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불가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2025년의 경우 등급별로 각각 2,306,400원(1등급), 2,083,400원(2등급), 1,485,700원(3등급), 1,370,600원(4등급), 1,151,600원(5등급), 657,400원(인지지원등급)임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4) 장기요양보험료를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지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박선아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741	sunapark@nabo.go.kr